[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 원 신 청 서 양 식

□【서식 제1호】사업 신청서
□ 【서식 제2호】신청자격 확인서
□ 【서식 제3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제4호】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제1호】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23 접수일자 2023								
임대물건지 주소	[도로명] 경기도 (시, 군) 구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일금 원(₩)								
융자신청금액	일금 원(₩)								
신청유형 (해당사항에 체크) 대출 목적 (중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자립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다문화가정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노인 1인 가구 □ 비주택 거주민(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 국가유공자 □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 대환대출(□ 1금융권 □ 2금융권)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 주택소유자								
추천서를 받더라도 농협은행,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신용회복 중, 회생, 파산, 면책 후 5년 미경과자, 연체 중인 자 등 대출 불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기관의 현지 실태 조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휴대전화 번호: 추천서 수령지 주소·(우편번호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2호】

신청자격 확인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구분	자격 확인	서명
1.	전체 (공통)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해당 시·군의 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지원사업 수혜자(2023년 기준)가 아님을 확인함 (예: 신혼부부 대상 이자지원 사업 등)	
2.	신청유형이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에 해당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2022년도 연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임을 확인함 (3인 이하 471만원, 4인 539만원, 5인 568만원, 6인 617만원, 7인 666만원 등)	
3.	신청자가 매 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인 경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또는 수혜자)가 아님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융자추천 정보 통보, 대출현황 파악과 통계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요청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가. 경기도(광역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기관
 - 나. 융자지원 관련 협약기관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경기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나. 주거복지 정책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등
-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자산 항목] 주택 소유 여부,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체정보 등
 [기타 항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공공부조 수급내역 등
- 4. 제공 동의의 효력기간 :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 부터 사업 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까지 위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5. 본인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본인은 위 각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본인은 위 각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8.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자 의무사항

- 1. 당초 사업 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경기도에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미증빙시 융자추천이 취소되거나 이자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
 - * 신청자 자격요건 상 변동(기초생활수급 탈락 등), 신청자 거주지 변동, 임차물건 주소지 변동, 임대보증금 변동 등
- 2.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협약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신청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 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이자지원 기간 내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혜 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5. 융자추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④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 ⑤ 그밖에 융자추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여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위약금은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이자액과 대출보증료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제5조에 의거하여 융자추천 취소 통보를 받은 자가 본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경기도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_	_	_				
ᄾ	첬	자		(서명	平는	Ó.